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05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선근

피 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가 별지 목록 기재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2020. 5. 4.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에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을 주식회사 D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지붕판금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도금강판 등을 납품받아 왔다. 이로 인하여 D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D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채무 원금은 2020. 4. 24. 기준 4,039,007,672원이었으나 D가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20. 6. 15. 2020차전1000호로 D에게 '원고에게 4,039,007,6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 D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4. 30.경까지 D에게 유리섬유제품을 공급하였다. 피고가 2020. 5. 4. 기준으로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은 3,746,771,464원이다.

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7. D에 대하여 '피고에게 3,606,771,4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2020가합546748호).

마. D는 2020. 5. 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66,041,964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D는 2020. 5. 5. E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20. 5. 7. E에 도달하였다.

바. E은 2020. 10. 23. E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은 466,041,964원이 아니라

360,000,000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어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으며, 수개의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2020년 금제1418호로 피공탁자를 피고와 D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98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3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3,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3채무자인 E이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과 같이, D가 2020. 4. 24. 원고에게 4,039,007,67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인 2020. 5. 4.경 D에 대해 보유하던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갑 제9부터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인 2020. 5. 4.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가 발행하여 원고 등 거래업체들에게 교부한 전자어음 중 만기일이 2020. 4. 30.인 전자어음이 2020. 5. 4. 예금 부족으로 지급거절(당좌부도)되었고, 이후에도 D가 발행한 약 50건의 전자어음들이 지급거절되었으며, D는 2020. 5. 7. 위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D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D는 2018년도에 약 4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9년도에 약 1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외부감사인은 2020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범위제한 등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거절하였다. D의 재무상황은 2020년에 들어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 D의 2020. 5. 6.부터 2020. 10. 26.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연체액이 약 120억 원에 이르렀다.

라) D는 2020. 5. 4.경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일부씩 양도하여 주었는데, 채권자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위 양도채권액은 채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점과 2019년 말 기준 D의 유동자산이 대부분 매출채권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미 변제 자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D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는 아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도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기재는 없다.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가 피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2020. 5. 4.경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안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가 2020. 5. 4.경 피고 외에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일부씩 양도하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것처럼 D가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각 채권액은 채권자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각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2) D로부터 2020. 5. 4.경 물품대금채권을 일부씩 양수한 채권자들 외에도 D에게 대출금을 대여한 다수의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하여서도 채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D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100억 원 이상의 대출원금 및 이자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당시 D의 주요 자산은 물품대금채권이나 기계설비 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에 위 채무에 상당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가 D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등 그 경위나 목적에 있어서 사해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과 같이, D는 2020. 5. 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 D는 이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나머지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D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2020. 5. 4.경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안분 양도한 점에 비추어 D의 사해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3. 나. 3) 나)에서 본 것처럼, D가 2020. 5. 4.경 피고 외에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일부씩 양도하여주었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상당함에도 D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을 근거로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의 2020. 5. 4.자 부도 직전인 2020. 4. 30.에도 D에 422,336,93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는 등 D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도 선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라 함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D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어음이 지급거절된 날인 2020. 5. 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당시 D가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하였고, E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위 물품대금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에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형물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탁공무원)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심현우, 판사 임동환

별지